

윤리교육과 학생회칙



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

일부 개정 : 2018년
일부 개정 : 2019년 9월 3일
일부 개정 : 2021년 9월 3일

윤리교육과 회칙

제 1 장. 총 칙

제 1 조. 명 칭

본회는 '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학생회'라 칭한다.

제 2 조. 목 적

윤리의식 고취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심오한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 및 교사로서의 품성배양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.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

가. 정회원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

나. 명예회원은 본 과 졸업생으로 한다.

제 4 조. 본 회에서는 본 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가. 총회

나. 집행부

제 2 장.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5 조.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가. 본 회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가할 권리

나.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
다.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 권리

제 6 조.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
가. 본 회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

나.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

다. 기타 회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

제 3 장. 주관 활동

제 7 조. 본회는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관한다.

가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(체육대회, 수련회, 환영회 등)

나. 윤리적 지식 및 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(학술제, 발표회, 강연회 등)

다.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은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집행부가 결정한다.

제 4 장. 총회

제 8 조. 본 기구는 본 과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.

제 9 조. 본 기구의 구성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한다.

제 10 조. 본 기구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
가. 과 학생회장 선출의 기능

나.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의 의결과 예산안 심의

다. 회칙의 제정

라. 기타 학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의 토의 및 의결

제 11 조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
가. 정기 총회는 매 학기 초에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
나. 임시 총회는 필요시 학생회장과 집행부 임원 과반수 이상 및 정회원 15인의 발의에 의해서 소집한다.

제 12 조. 본 기구의 정족수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다수결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. 임원의 선거와 승인, 정부회장의 불신임 의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원의 2/3 이상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. (단, 15조에 한해서는 집행부의 재량에 맡긴다.)

제 5 장. 임 원

제 13 조. 본 회의 회장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 또는 2인, 서기 1인을 둔다.

(단, 서기는 겸직이 가능하며 재량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.)

가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집행부 의장이 된다.

나. 회장은 각 부서의 임원을 임명하여 총회를 통솔하는 것으로 한다.

다. 부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라. 총무는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정을 담당한다.

마. 회장과 부회장의 출마 조건은 본 과 4학기 이수 중인 자에 한한다.

바. 만일 보궐되면 1주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며, 전임 회장이 대행한다.

제 14 조.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둬 운영 원칙으로 한다.

가. 교육부: 본 회의 학술 활동 전반의 업무와 본 회의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나. 편집부: 본 회의 소식지, 학회지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다. 홍보섭외부: 본 회의 행사의 홍보와 섭외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.

라. 행정관리부: 본과의 학생회실의 비품 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의 업무는 집행부의 재량에 맡긴다.

마. 환경부: 본과의 환경미화와 학생회실 및 사물함 관리를 담당한다.

바. 멀티미디어부: 본과의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멀티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
- 제 15 조. 본 회의 각 학년의 대표를 둔다.
가. 각 학년 대표는 당 학년을 대표한다.
나. 각 학년 대표는 당 학년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.
다. 각 학년 대표는 집행부의 위원이 된다.

제 16 조. 본 회 각 학년의 대표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그 외 임원은 두 학기로 한다.

제 6 장. 집행부

- 제 17 조. 본 기구는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기획과 집행을 한다.
제 18 조. 본 기구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제 19 조. 본 기구는 학생회장, 부회장, 각 부서의 부원과 각 학년 대표들로 구성된다.
제 20 조. 본 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. 선거

- 제 21 조. (방법) 학생회장의 선출은 직접, 비밀, 보통, 평등 투표로 한다.
제 22 조. (선거관리위원회) 현행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부서의 임원들이 위원이 된다.
제 23 조. (시기) 9월 중에 시행하며 위원장이 1주일 이상 공고한다.
제 24 조. (입후보 자격)
가.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4학기 이수 중인 자.
나. 입후보자를 제외한 본 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이 추천을 받아 선거일 5일 전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.
- 제 25 조. 입후보자는 사전에 집행부를 구성할 의무를 가지며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집행부의 구성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 26 조. (당선자 결정)
가.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의 2/3 이상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.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. 단,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동일하다.
나. 당선자 결정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포한다.
- 제 27 조. (보궐 선거) 보궐 선거의 방법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.

제 8 장. 회칙개정

제 28 조. (발의) 회칙개정은 학생회장, 집행부의 과반수 이상, 정회원의 1/3 이상이 발의한다.

제 29 조. (공고)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갖는다.

제 30 조. (의결) 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 장. 재정

제 31 조. 본 회의 재원은 학회비와 보조금,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 32 조. 본 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동의를 구한다.

제 33 조. 본 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 활동의 경비 지출은 집행부의 결정에 의한다.

제 34 조. 재정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원의 수입 지출은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.

제 10 장. 기타

제 35 조.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학내 포교 활동을 금지한다.

(이때, 모든 종교의 포교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다.)

부 칙

제 1 조.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 2 조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의결과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임의의 결정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
[개정 연혁]

일부 개정일 2018년

36대 집행부

제 1장 제 2조, 제 3장 일부 개정
제 5장 제 13조, 제 16조, 제 6장 일부 개정
제 10장 신설

일부 개정일 2019년 9월 3일

37대 집행부

제 4장 제 12조 일부 개정

일부 개정일 2021년 9월 3일

39대 집행부

제 5장 제 13조, 제 14조, 제 16조 일부 개정
제 7장 제 24조, 제 26조 일부 개정